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예산의 목적외 사용)
 기관명 노벨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 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유치원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노벨유치원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차량 주유비 지출 등 총 11건 1,612,000원을 유치원 운영 및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노벨유치원 개인차량 주유 등 부적정 집행 내역

연번	일자	적요	채주	지출액(원)	비고
1	2018/05/01	○○○주유소/업무추진	○○○주유소	95,000	취발유
2	2018/05/16	○○○주유소/업무추진	○○○주유소	65,000	취발유
3	2018/06/05	연합회비		750,000	
4	2018/06/07	○○○주유소/업무추진	○○○주유소	91,000	취발유
5	2018/06/22	○○○주유소/업무추진	○○○주유소	89,000	취발유
6	2018/07/10	○○○주유소/업무추진	○○○주유소	94,000	취발유
7	2018/07/20	○○○주유소/업무추진	○○○주유소	68,000	취발유
8	2018/08/30	○○○주유소/업무추진	○○○주유소	73,000	취발유

9	2018/10/01	부의금○○원장		100,000	
10	2018/10/02	○○○주유소/업무추진	○○○주유소	87,000	휘발유
11	2018/11/23	강사○○○축의금	업무추진비	100,000	
합 계				1,612,000	

※ 부적정 집행액 1,612,000원 감사처분 전 보전완료

조치할 사항 노벨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관명 노벨유치원
 내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운영위원회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르면 유아수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9명 이상 11명 이하 운영위원을, 유아 수 100명 미만인 유치원에는 5명 이상 8명 이하 운영위원을 두며, 그중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교원위원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벨유치원에서는 2018~2019학년도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 [표2]와 같이 2018학년도에 운영위원을 6명으로 과소하게 구성하고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구성 비율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2019학년도 운영위원 구성 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표2]노벨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학년도	원아수 (3.1.기준)	운영위원(단위:명)			비고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계	
2018	101	3	3	6	운영위원과소, 구성비율 부적정
2019	68	3	3	6	구성비율 부적정

조치할 사항 노벨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통학차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노벨유치원
내 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4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를용 금지 등)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자는 자가 또는 임대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지입차량으로는 운행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35조(계약의 원칙) 및 제36조(계약담당자)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원장이며, 계약의 원칙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성실히 체결하여야 하며, 제3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벨유치원에서는 2018~2019회계연도에 아래 [표3]와 같이 통학차량 운영 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후 임차료를 계약업체가 아닌 부정당 채주인 차량기

사에게 지급하였고,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유치원 회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노벨유치원 차량기사 ○○○ 입금내역

거래일자	거래내용	지출액(원)	채주
2018-03-08	차량기사급여	1,700,000	○○○
2018-04-06	차량기사	1,700,000	○○○
2018-05-11	차량기사	1,700,000	○○○
2018-06-07	차량기사	1,700,000	○○○
2018-07-06	차량기사	1,700,000	○○○
2018-08-10	차량기사	1,700,000	○○○
2018-09-07	차량기사	1,700,000	○○○
2018-10-10	차량기사	1,700,000	○○○
2018-11-06	차량기사	1,700,000	○○○
2018-12-07	차량기사	1,700,000	○○○
2019-01-10	차량운전원	1,700,000	○○○
2019-02-07	차량기사	1,700,000	○○○
2019-03-08	차량기사	1,700,000	○○○
2019-04-05	차량기사	1,700,000	○○○
합 계		23,800,000	

조치할 사항 노벨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